

	<h2 style="margin: 0;">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h2>	규정번호	3-3-10
		제정일자	2006. 7. 3.
		개정일자	2025. 9.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및 본교 학칙 제23조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6)

제2조(산업체 위탁교육 시행 및 운영)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시행 및 운영한다. (개정 2014.10.6)

제3조(위탁형태) 위탁교육의 기본 형태는 각 호에 준한다.

1. 단독위탁 :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위탁할 경우
2. 연합위탁 : 2개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위탁할 경우

제4조(학급편성) ①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 학과별 개설인원은 15명 이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존의 외부위탁교육장 개설인원은 15명 이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신설 외부위탁교육장 개설인원은 15명 이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개설인원이 전항의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9.8.1.)(개정 2025.9.1)

제5조(위탁교육용 교육장 제공 및 운영 협약) ①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산업체의 장(지역단위기관, 지점 등 단위기관의 장을 포함)과 대학의 장 간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로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위탁교육장 제공은 산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 및 기자재) 외부 위탁교육장의 시설 및 기자재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산업체에서 일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에서 유휴 기자재는 대여가 가능하며, 학과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신입생 등록) 신입생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납부 및 장학금 지급) ①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장의 책임하에 본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해 전공학부 및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위탁생의 복학으로 인한 등록금 납부는 입학 당시 학급편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전공학부 및 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장학금 지급은 본 대학 장학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9.1.)
- ⑤ 삭제 <2024.9.1.>

[제목개정 2024.9.1.]

제9조(입학취소) 입학원서 등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위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하며, 기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관리수당) ① 산업체위탁교육반의 홍보,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별도의 입시홍보 및 관리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

② 지급기준은 모집인원, 신입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재학생충원율, 학생관리 노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5.5.1.)

③ 당해연도 신입생의 경우 입시홍보와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학생에 대해 차년도에는 입시홍보 수당을 제외하고 관리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18.4.1.]

[전문개정 2018.4.1.]

제10조의2(관리운영) 외부 위탁교육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위탁교육장을 운영 관리하는 'Head Master'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

제10조의3(산업체위탁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교육과정 심의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산업체위탁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하고, 외부 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25.9.1.]

제10조의4(산업체위탁교육과정 심의) 산업체위탁교육 교육과정의 각 학과별 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심의를 위해 필요시 산업체위탁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 결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

제11조(기타사항)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의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8.4.1.]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